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681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                  |   |
|------------------|---|
| II . 검토 의견 ..... | 2 |
|------------------|---|



# I. 개요

##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11. 28.

다. 회 부 일 : 2025. 12. 1.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로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 II. 검토 의견

- 개정안은 제15조제1항<sup>1)</sup>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을 위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 현행                | 개정안                                                                                                                                                                    |
|-------------------|------------------------------------------------------------------------------------------------------------------------------------------------------------------------|
| 제15조의2(결격사유) (생략) | 제15조의2(결격사유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 <신설>              |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신설>              | 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

1)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15조의8(시장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u>개인정보의 내용, 대상기관 및 제공 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1. (생략)                                                                                                                        | 제15조의8(시장명령) -----<br>-----<br>-----<br>-----<br>-----<br>-----<br>-----. |
| 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 1. (현행과 같음)                                                               |
| 3. ~ 7. (생략)                                                                                                                   | 2. 제15조의2제1항을-----<br>-----<br>-----                                      |
|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3. ~ 7. (현행과 같음)                                                          |
| ① (생략)                                                                                                                         |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① (현행과 같음)                                                                |
| 1. (생략)                                                                                                                        | ② -----<br>-----<br>-----<br>-----<br>-----.                              |
| 2.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 1. (현행과 같음)                                                               |
|                                                                                                                                | 2. 제15조의2제1항-----<br>-----.                                               |
|                                                                                                                                | 제15조의2제1항제7호-----                                                         |

| 현행                                  | 개정안                      |
|-------------------------------------|--------------------------|
|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br>-----<br>-----. |
| ③ ~ ⑤ (생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제15조의2는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으로, 18세 미만인 자나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등이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법 제15조의2)>

| 각 호 | 결격 사유                                                                                |
|-----|--------------------------------------------------------------------------------------|
| 1호  |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2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 3호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
| 4호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5호  |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6호  | 법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7호  |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위 결격사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시정명령<sup>2)</sup>이나

2) 「모자보건법」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영업폐쇄<sup>3)</sup> 처분을 할 수 있음.

- 현재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 유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토대로 확인되고 있음.

#### <산후조리원 인력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방법>

| 각 호       | 결격 사유                              | 보유기관           | 확인 방법                                       |
|-----------|------------------------------------|----------------|---------------------------------------------|
| 1호        | 18세 미만인 자                          | 행정안전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br>-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결격사유 조회  |
|           | 피성년후견인 및<br>피한정후견인                 | 법무부 및<br>법원행정처 |                                             |
| 2호        | 정신질환자                              | -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의사의 진단서                  |
| 3호        | 마약류 중독자                            | -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의사의 진단서                  |
| 4호·<br>5호 | 금고 이상 실형 선고자<br>및 집행유예자            | 경찰청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br>-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결격사유 조회 |
| 6호        |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br>받고 1년이 지나지<br>아니한 자 | 행정안전부          | 서울행정정보시스템 활용                                |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으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3) 「모자보건법」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2.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생략)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할 수 있음.<sup>4)</sup>

-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격사유 관련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sup>5)</sup>.
- 이에 개정안은 산후조리업 영업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격사유 확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직접 해당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89조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6)</sup>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 10. (생략)
- ③ ~ ⑤ (생략)

- 5) 다만,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6) 「도로교통법」

제88조(수시 적성검사) 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에 대하여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같이 결격사유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이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검토할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법」 7)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더욱이 현행법상 결격사유 관련 정보는 건강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민감정보<sup>8)</sup>에 해당함.

②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기간·통지와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제88조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중략)

####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따라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관련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 기관들 사이에서 공유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특례를 규정할 공익적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경우에도 개정안의 내용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sup>9)</sup>의 상당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및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등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관계 기관 간 정보 제공에 관하여 “요청기관, 이용목적, 요청정보,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요청정보가 다수일 경우는 해당 정보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하는 표준입법모델<sup>10)</sup>을 제시한 바 있음(<참고자료1 참조>)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사업지침 등에 따라 다년간 결격사유 조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고, 특히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9) 판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이라고 보고 있음(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10) 기관 간 정보공유 표준입법모델은 기존에는 부처 간 수집 목적 외 사용 및 정보 제공 금지 조항으로 인해 협업이 제한되었으나, 정보공유 근거 마련 시 부처 간 해석 이견을 방지하고, 명확한 조문 형태를 제시하여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 요청 가능 기관, 제공 가능 정보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 의무, 정보 활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신속한 정보공유 기반 조성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됨.

중독자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이 의료기관을 통한 진단서를 제출하는 현재의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된다는 입장이고,

대한의사협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의료정보·정신건강기록 등 고도의 민감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공유될 여지가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본인이 직접 진단서를 제출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는 등의 절차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 부처명    | 개정안에 대한 의견                                                                                                                                                                                                                                       |
|--------|--------------------------------------------------------------------------------------------------------------------------------------------------------------------------------------------------------------------------------------------------|
| 보건복지부  | ○지자체에서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엄격히 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사업지침 등에 따라 다년간 결격사유 조회를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고, 특히 정신질환자나 마약류중독자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이 의료기관을 통한 진단서를 제출하는 현재의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됨.                                                               |
| 대한의사협회 | ○지방자치단체장이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명목으로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의료정보·정신건강기록 등 고도의 민감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공유될 여지가 있음.<br>○따라서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본인이 직접 진단서를 제출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절차적 보장이 필요함. |

문 의 처

02)6788-5500

|              |                         |
|--------------|-------------------------|
| <b>【참고1】</b> | <b>기관 간 정보공유 표준입법모델</b> |
|--------------|-------------------------|

자료: 법제처, 안전행정부('14년 9월)<sup>11)</sup>

□ 요청기관, 이용목적, 요청정보,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요청정보가 다수일 경우는 해당 정보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한다.

- 법률에서부터 요청 정보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범위가 한  
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야 한다.

□ 과세정보 요청 입안 사례

**법률 00조 【자료제공의 요청】**

- ① 국토교통부장관(요청기관)은 제00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  
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이용목적)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요청정보): 세무관서의 장(대상기관)
  2. AAA: A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얻은 정보  
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  
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시행령 00조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 ① 법 제0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
  2. aaa

※자료: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현황(2024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11) 법제처·안전행정부, 2014년 9월 5일. 보도자료: 법제처·안행부, 표준 입법모델로 협업 속도 낸다! - 기관  
간 정보공유 가속화를 위해 표준 법령모델 마련 -